

[별지 제59호의4서식] (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) <개정 2019. 5. 30.>

<앞쪽>

신고·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
☐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¹⁾
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

접 수 점	접수 번호	
	접수 일자	
수	접 수 자	(서명)

성 명 ²⁾	한 글			영 문 (대문자)		
여 권 번 호					※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.	
신 분 에 따 른 구 분 ³⁾ ※ 해당 칸에 ☒ 표 한 후 기재)	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	주 민 등 록 번 호	-			
		주 소 (주민등록표상)	(시·도)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		
	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	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	-			
		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 지	(시·도)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		
	☐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	생 년 월 일	- -		성 별 (해당 칸에 ☒ 표)	남 ☐ 여 ☐
		등 록 기 준 지 (본 적 지)	(시·도)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		
	부 모 성 명 ⁴⁾	아버지 성 명			어머니 성 명	
연 락 처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전화번호 ⁵⁾ (가정·직장 등)	(국가번호) (지역번호) (전화번호) - - -				
	휴대전화번호 ⁵⁾	- - -				
	전자우편 ⁶⁾ (E-mail)					
국 외 거 소 ⁷⁾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거류국명			우편번호		
	주 소					☐ 공편을 거스로 신고할 사람 (☒ 표한 후 "주소"칸에 공관명만 기재) 투표예정공관 ⁸⁾
외국국적 보유여부 ※ 복수 국적자만 기재	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?	☐ 예 ☐ 아니오				
	국적보유 국가명					
	외국국적 취득사유	☐ 출생 ☐ 혼인 ☐ 입양 ☐ 인지 ☐ 기타()				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「공직선거법」(제218조의4)·(제218조의5)에 따라 (국외부재자신고)·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를(을)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(신 고 인) · (신 청 인) ⁹⁾ : (서명 또는 날인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○ ○ 구·시·군의 장 귀하						

※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 신고·신청서를 제출(방문, 우편 또는 전자우편)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)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유 의 사 항

1. 이 신고·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 신고·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·신청인에게 불이익(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3. 거짓으로 신고·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·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 성 요 령

1. "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"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☒ 표시를 하고, "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"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☒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
2. "성명"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 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
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
3. "신분에 따른 구분"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"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"를 적고,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"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"를 적어야 하며,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"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등록기준지(본적지)"를 적고 "성별"의 해당 칸에 ☒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
4. "부모 성명"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·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(본적지)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"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"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5. "전화번호"와 "휴대전화번호"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☞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·재외선거인 요건확인,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.

6. "전자우편(E-mail)"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7. "국외거소"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(한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)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
☞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☒ 표시 후 "주소"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.

8. "투표예정공관"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
9. 끝부분의 "(신고인)·(신청인)"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